

定 數 物 品 處 分 追 認 承 認 案  
審 查 報 告 書

1993年 12月

總 務 委 員 會

1. 審查經過

가. 提出日字 : 1993年 11月 11日

나. 提出者 : 光州直轄市 西區廳長

다. 回附日字 : 1993年 11月 15日 (總務委員會)

라. 上程日字 [ 1993年 12月 21日 第29回 會期中 第9次 總務委員會  
第29回 光州直轄市 西區議會 (定期會)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會計課長 魏 勳)

가. 提案事由

- 행정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중 불요불급하고 내구년수 초과 등으로 사용 불능한 물품을 매각처분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
-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대체취득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원활한 행정 능률을 제고키 위함

나. 主要骨子

○ 불용처분 품목 및 불용사유

(단위 : 천원)

품 목	규 격	수량	금 액	구 입 일	불 용 처 분 사 유
계		3	20,321		
승용차(역셀)	1300cc (1나3099)	1	3,928	86.12. 1	내구년수 초과및 노후로 사용불능
화물차(중형)	복사 4.5톤 (8가8617)	1	10,393	85. 1.10	"
구 급 차	1톤 (8가7131)	1	6,000	84. 3.19	"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○ 금회 정수물품 불용처분 승인 요청의 건은 93. 9. 1 ~ 93. 9. 11 까지 우리 총무 위원회가 정수물품관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출된 사항으로 집행 기관의 업무추진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

4. 質疑및答辯要旨 : 생략

5. 討論要旨 : 없음

6. 審査結果 :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

7. 少數意見要旨 : 없음